
Policy and Law Report _Vol.87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 5.24 ~ 5.31) -

May 31, 2021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함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① 전국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 추진현황, ② 금융 지원방안 추진현황, ③ 스마트 농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④ 코철근·철강 수급동향 점검, ⑤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 등이 있음	2021-05-28																						
산업통상자원부	• 제7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과 향후 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차량용반도체, 희토류 등 최근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대두된 품목에 대해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 논의, ② 소부장 산업의 당면 현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특화단지 육성, 으뜸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지원, 미래 R&D 로드맵 등 미래 글로벌 공급망 선도를 위한 선제적 전략 논의, ③ 소부장 특화단지·으뜸기업, 핵심품목 R&D방안 등 「소부장특별법」 및 「소부장2.0대책」에 근거한 주요 정책이 완결성을 갖추게 된 것에 대한 평가 및 본격 추진 등이 있음 < 정책 추진 경과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안건명</th><th>주요내용</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3">특화단지</td><td>①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계획 ('20.5)</td><td>• 추진계획</td></tr> <tr> <td>②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안 ('21.1)</td><td>• 5개 단지 지정안 보고</td></tr> <tr> <td>③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 ('21.5)</td><td>• 단지별 지원방안</td></tr> <tr> <td rowspan="2">으뜸기업</td><td>① 특화선도기업 육성방안 ('20.5)</td><td>• 추진계획</td></tr> <tr> <td>② 으뜸기업 맞춤형 지원방안 ('21.5)</td><td>• 기업별 지원방안</td></tr> <tr> <td rowspan="3">핵심품목 R&D방안</td><td>① 소부장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19.8)</td><td>• 對일본 R&D품목 100개</td></tr> <tr> <td>②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 ('20.10)</td><td>• 對세계 R&D품목 85개</td></tr> <tr> <td>③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R&D 추진방안 ('21.5)</td><td>• 미래선도품목 65개</td></tr> </tbody> </table>	구분	안건명	주요내용	특화단지	①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계획 ('20.5)	• 추진계획	②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안 ('21.1)	• 5개 단지 지정안 보고	③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 ('21.5)	• 단지별 지원방안	으뜸기업	① 특화선도기업 육성방안 ('20.5)	• 추진계획	② 으뜸기업 맞춤형 지원방안 ('21.5)	• 기업별 지원방안	핵심품목 R&D방안	① 소부장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19.8)	• 對일본 R&D품목 100개	②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 ('20.10)	• 對세계 R&D품목 85개	③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R&D 추진방안 ('21.5)	• 미래선도품목 65개	2021-05-25
구분	안건명	주요내용																						
특화단지	①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계획 ('20.5)	• 추진계획																						
	②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안 ('21.1)	• 5개 단지 지정안 보고																						
	③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 ('21.5)	• 단지별 지원방안																						
으뜸기업	① 특화선도기업 육성방안 ('20.5)	• 추진계획																						
	② 으뜸기업 맞춤형 지원방안 ('21.5)	• 기업별 지원방안																						
핵심품목 R&D방안	① 소부장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19.8)	• 對일본 R&D품목 100개																						
	②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 ('20.10)	• 對세계 R&D품목 85개																						
	③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R&D 추진방안 ('21.5)	• 미래선도품목 65개																						

부처	내용	일시
식품 의약품 안전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할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7일 개정·공포함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기준을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주택용도 건축물을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가능, ② 식품 검사실과 위생용품검사실 공동사용 허용, ③ 식품·축산물 HACCP 인증·변경 수수료 운 영기준 단일화 등이 있음	2021-05-27
금융 위원회	• 인가절차 간소화 및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1년 5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은 4개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위해 인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본시장에서 시장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임 * 이용우 의원안('20.9.3. 발의) · 유동수 의원안('20.11.24. 발의) · 홍성국 의원안('20.11.4. 발의) · 이영 의원안('20.11.12. 발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불법 계좌대여 알선·중개행위 금지(안 제11조의2 신설 및 안 제444조제1호의2 신설) - 계좌대여 알선·중개 금지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밝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② 기존 증권사의 인가단위 업무 추가시 등록제 도입(안 제15조, 안 제16조의2 신설 등) -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기존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증권사)가 같은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단위 업무를 추가할 경우 등록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업무단위 추가등록 시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및 사업계획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함 ③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 등에 관한 특례(안 제16조의3 신설) -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기존 영업을 동일하게 영위하는 경우 단순한 형태변경임을 감안하여 업무추가 등록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심사요건 일부를 면제 또는 완화함 ④.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직접 지급 절차 마련(안 제74조) - 예치금융투자업자(증권사 등)의 파산 또는 인가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재 예치 금융투자업자가 예치기관(증권금융회사 등)에 예치·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예치기관이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 ⑤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의무화 및 등록대상 확대(안 제254조제1항) - 투자회사형 펀드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펀드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등록을 의무화함	2021-05-21

부처	내용	일시
금융 위원회	⑥ 단기금융업 인가요건 추가(안 제360조제2항제6호 신설 등) - 단기금융업자의 인가요건에 본인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갓출 것”을 추가함 ⑦ 시세조종행위에 제공된 재산의 필요적 몰수(안 제447조의2) - 현재 “시세조종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세조종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도록 범위 확대 등이 있음	
	• <u>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u>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한바, 적용기간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6개월('21.3.25.~9.24.), 적용대상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 위반행위이며,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별로 판단.키로 함 비조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②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다만,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③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임	2021-05-26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환경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냉매(冷媒)의 사용을 억제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냉매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는 한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폐플라스틱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해서는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21-05-25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인화성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가 화재 위험 감시를 위해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그리고 화기를 사용한 작업이 금지되는 장소를 명확히 하고, 밀폐공간에서의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는 자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2021-05-28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종전에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식품의 영양성분이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는 경우 글씨크기 등 표시방법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식품의 용기·포장에 적용되는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가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기능성 표시를 하는 일반 식품을 추가하도록 함 식품 및 축산물 외에 건강기능식품도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표시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 등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 등의 범위를 확대하며,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그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1-05-27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법무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차인이 늘어나고 있으나, 폐업을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료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음 이에 법무부는 기존부터 법리상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이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명문화하여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약 해지 전 임대인의 차임 감액을 유도하고자 함 주요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금지조치 또는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중대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권 행사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함(안 제11조의2 신설) ※ 의견제시기간 :7/12(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로 제출	2021-05-24
국토교통부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지역의 도시성장과 고용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870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됨에 따라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과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내용과 절차,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요건과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업지역 등 용어 정의(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법에서 위임된 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업지역, 지원기반시설, 공공임대산업시설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종류를 명확히 규정함 ②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내용 및 수립절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은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원칙 및 계획의 기본방향, 지원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의 기본방향 등의 내용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항목 및 방법과 절차를 정함	2021-05-2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③ 공업지역 관리유형 등 구분(안 제9조) - 해당 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으로 세분하고, 필요 시 혼용하여 적용 등 효과적인 공업지역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유형을 구분함 ④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 등(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공업지역기본계획에는 산업혁신 및 일자리 창출방안, 공업지역 외 지역에 입지하는 공장의 이전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경미한 변경 등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함 ⑤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 산업쇠퇴정도, 건축물 및 기반시설의 노후도 등 산업정비구역에 대한 지정 요건과 분할 및 결합 지정방법,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자의 요건, 산업정비구역 계획 내용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함 ⑥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절차 등 (안 제25조부터 안 제27조까지) - 복합적인 토지이용으로 공업지역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산업혁신구역에 대한 지정요건과 시장·군수 및 그 외의 자가 제안하는 산업혁신구역계획의 내용 및 추진 절차 등을 정함 그 외 ⑦ 사업시행자 자격 및 지정신청서 첨부도서(안 제29조 및 제30조), ⑧ 총괄사업관리자의 대상 및 선정방법과 업무범위(안 제31조), ⑨ 실시계획의 작성 및 고시 등(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⑩ 시행방식별 세부내용(안 제35조 및 제36조), ⑪ 공사완료의 공고 등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 세부내용(안 제37부터 제46조까지), ⑫ 산업정비구역계획 및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특례(안 제52조 및 제53조), ⑬ 공업지역 정비를 위한 지원 내용(안 제54조부터 제61조까지), ⑭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위탁·운영(안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등이 있음 ※ 의견제시기간 :7/5(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로 제출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0인)」 우리나라는 특정금융정보법개정을 통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자금세탁방지에만 초점을 두어, 가상자산 불법 유출,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도록 구체적인 인가요건을 규정하고,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사업자 의무사항으로는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예치하고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중요사항 · 수수료 · 약관을 공시하도록 하여 이용자와 사업자간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조건 · 위험요소 ·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고지하는 한편 누구든지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이용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여 가상자산 거래의 공정성 · 신뢰성 ·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함(안 제2조) ② 가상자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5조) ③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예치하고 이용자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④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안 제11조 및 제13조) 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조건과 위험요소 등을 고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금지함(안 제14조 및 제15조) ⑥ 가상자산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시서류, 수수료 부과기준, 약관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등이 있음	2021-05-2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재편되는 등 시장상황이 변화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을 기초로 설계되어 변화된 시장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의 의무 및 책임을 적절히 규율하는 것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일상생활 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자상거래법 체계 및 용어 재정비(안 제2조) - 이에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정의하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거래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연결수단 제공’, ‘거래중개’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② 인접지역 거래에 대한 적용범위 수정(안 제3조) - 배달앱 등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인접지역 개념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판매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피해구제 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배달음식 판매업자 등 입점업체에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은 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이와 함께,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온라인 판매 신고의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③ 역외적용 규정 신설(안 제5조) - 해외직구·구매대행 활성화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명시적 규정 부재로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법집행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므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경우에도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함 ④ 유료전환 상품 소비자 동의절차 강화(안 제10조제6항) - 원칙적으로 유료전환 시점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재화 등이 무상으로 공급되는 시점에 유료전환 일자, 가격 및 거래조건, 해지조건 및 효과 등에 대해 소비자에 고지하고, 유료전환 전 소비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	2021-05-26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정무 위원회	⑤ 정보의 투명성 확보조치 신설(안 제16조) -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된 검색결과를 제공할 때 광고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주요결정 기준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또한 사업자가 이용후기 게시판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⑥ 맞춤형 광고 고지의무 강화(안 제18조) - 타겟형 광고 등 맞춤형 광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자는 이를 일반광고와 구분할 수 없어 합리적 선택을 제약받게 되므로, 맞춤형 광고 제공시 그 내용과 방법을 고지하도록 규정함 ⑦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안 제19조) - 글로벌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국내소비자 간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영업소 등이 없는 경우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이 어려우며, 원활한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문서송달 등에도 애로가 있으므로, 해외사업자의 국내법 준수 및 소비자 분쟁해결 업무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해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함 ⑧ 위해방지 조치의무 신설(안 제20조) - 리콜명령 대상자의 리콜의무 이행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중앙·지방정부가 리콜명령 등 발동 시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해 직접 리콜 관련 전자적 조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⑨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확대(안 제24조) - 중개거래와 직매입을 혼용하는 하이브리드형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구분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중개거래 상품을 직매입 상품으로 오인하고 구매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직매입 상품의 판매주체를 표시하도록 하고,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청약접수, 대금수령 등 업무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함 ⑩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현실화(안 제25조, 제26조) - 자체영업 및 입점업체 영업 미구분·표시, 자신 명의로 표시·광고·공급·계약서 교부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계약당사자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소비자 손해 발생 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청약접수 등 거래과정의 중요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업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독책임을 부과되고 고의·과실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전환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현실화함 ⑪ 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안 제30조) - 개인간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분쟁발생시 연락처 및 거래내역을 공적 분쟁조정기구에 제공하여 분쟁조정에 협조하도록 함 ⑫ 동의의결제도 도입(안 제46조, 제47조) - 전자상거래에서의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는 동시다발적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나 피해금액이 소액인 이유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 ⑬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안 제48조) - 사실상 사문화된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명백한 범위반이 의심될 경우로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행위의 내용에 따라 표시·광고의 중지·삭제, 청약철회 방해 문구의 삭제, 사이트 내 경고 문구의 게시 등 다양한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함	2021-05-2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4인)」 수소경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수소의 생산단계에서 더이상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이제 현행법의 수소경제 육성 방향을 청정수소의 생산과 보급에 중점을 두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청정수소로 인증된 수소에 대하여 수소연료 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한 비율을 청정수소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소부문에서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며, 발전부문에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청정수소로 발전된 전력을 일정량 이상 구매하도록 청정수소 보급제도를 구축하여 현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 이바지 하고자 함	2021-05-24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0인)」 최근 거래소 간의 상장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홍콩, 싱가포르 거래소가 복수의결권을 허용해 아시아 지역에서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함 그러나 현행 「상법」은 1주1의결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배주주의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함 이에 창업 후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 간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4분의 3 이상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소수주주의 권리는 보호하면서도 실현가능성은 높이고자 함 아울러 정관기재사항과 복수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 및 의결권 제한 요건, 발행 보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복수의결권주식 남용방지와 함께 안전장치도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3까지 신설 등)	2021-05-2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1인)」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에너지회수율을 국가 자원목표로 설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폐기물 발생이 감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신설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거나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평가 결과 공개 외에 별다른 조치가 불가한 실정임 이에 실질적인 폐기물 발생 감량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폐기물 발생 감량률을 국가 및 사업장 폐기물 감량 목표로 추가하여 폐기물 감량 관리를 강화하고(안 제14조 및 제16조),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개선을 명령하며,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순환이용성 평가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36조)	2021-05-27
보건복지 위원회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의원 등 11인)」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화장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6호 및 제7호,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40조제1항제5호의2 신설)	2021-05-25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원회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6/4(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41호 발간	
국회도서관	6/1(화)	현안입법 알리기 - 감염병 방역·예방조치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및 가중처벌 규정 신설	
	6/3(목)	국외현안리포트 발간 - 호주 정부의 고등교육 학습 및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 안내	
국회 예산정책처	주중	정기보고서 발간 - 「2021 대한민국 조세」 - 「2021 조세수첩」	
	주중	현안보고서 발간 - 「경기조정 재정수지와 잠재성장률 추정」	
	주중	「NABO 경제 산업동향&이슈」 6월호 발간	
	6/8(화)	「경기조정 재정수지와 잠재성장률 추정」 발간	
국회 입법조사처	6/1(화) 14:00	전문가 간담회 (강신욱 한국수자원공사 센터장) -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발생 추이	
	6/1(화) 13:30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 - 주제:민주적 개헌논의의 헌법적 조건, 헌법기능과 기본질서, 헌법개정의 방향, 헌법개정과 정치개혁	유튜브 라이브
	6/1(화) 13:30	「국회입법조사처-충청남도의회 업무협약」 체결 - 중앙-지방 상생발전 및 지역 현안 발굴을 위한 상호협력	유튜브 라이브
	주중	이슈와 논점, NARS 현안분석 등 발간	
국회 미래연구원	6/4(금) 14:00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온라인 줌
	6/10(목)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20호 -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별첨1] 제387회 국회(5월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법사위	5/31(월) 10:00	전체회의	검찰총장후보자(김오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국방위	5/31(월) 10:00	전체회의	현안보고 등
여가위	5/31(월) 10:00	전체회의	국회의장 직속 성평등자문위원회

※ 위원회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합니다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5/31(월) 14:00	미래 안보환경과 국방의 역할	안규백, 한기호, 기동민 의원실	안규백TV
5/31(월) 15:00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온라인 간담회 -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김한정, 김경협 의원실, 한반도평화포럼	ZOOM
6/1(화) 14:30	누구나 집 5.0 및 누구나 주택보증시스템 도입 방 안 세미나	박정, 유동수, 이병훈 의원실	이룸센터 이룸홀
6/2(수) 10:00	경기도 기본금융 국회토론회	김병욱, 김영진, 김홍걸, 문정복 의원실 외	글래드호텔
6/2(수) 10:00	보험사 개인 의료 정보 표준화·디지털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민형배, 배진교 의원실, 공동운수노조 외	의원회관 348 호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5/25(화) 10:00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과 우리의 대응 - 2050 탄소중립, 과연 가능한가?	조태용 의원실	비대면화상 토론회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을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소속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소속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서예지 소속변호사 | T. 02-316-1787 | E. yjiseo@shinkim.com |
| • 문응필 소속변호사 | T. 02-316-4047 | E. epmoon@shinkim.com |
| • 최유리 소속변호사 | T. 02-316-1748 |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소속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소속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 • 박희훈 소속변호사 | T. 02-316-7917 | E. hhpark@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